

## □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허용 여부	내용	비고
선거운동원	허용	· 10인 이내 ※ 연설회장 입장가능, 연설회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홍보물, 명함 배포 금지, 피켓 소지 금지)	※공명분과에서 배부한 비표착용으로 등록을 같음
부스 (접이식 천막)	불허		※식음료 배포 금지
홍보물	불허	· 우편발송 불허 · 연설회장 등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 불허 ※ 간담회 장소 배포 불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준함
현수막	불허	· 합동연설회가 개최시 불허	
어깨띠	불허	· 불허	
표지물(몸벽보)	허용 (우내에서만 시행) (외부사용 금지)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피켓		· 길이 90센티미터, 너비 60센티미터 이내	
소품		· 수기 · 규격 :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손카드 또는 응원머플러 · 규격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90센티미터	
		· 마스크트 ·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손으로 지닐수 있는 크기 (규칙 제33조)	
명함	허용	· 후보자본인(제6차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결26.3.19) ※ 연설회, 대담 및 간담회 장소에서 배포 가능 ※ 연설회장은 현관·로비에서만 배포 가능 · 성명·사진, 전화번호, 학력·경력, 그밖의 홍보사항 · 길이 : 9센티미터, 너비 : 5센티미터 · 제한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준함
전화·전자홍보 등	일부허용	·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 · 총 8회 발송가능(후보자 개별발송) (※후보자의 8회 발송에 포함, 정부선관위 신고 사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 문자메시지 · 일반문자메시지 발송 허용 (20건 이하 발송)	
		· 투표알림문자 : 3회 이내	※선관위 발송
		전화, 온라인(E-mail, SNS 등) (전화, 온라인) 제한 없이 허용	※녹음한 후보자 음성 사용한 전화홍보(투표 독려 포함)는 불허
금지 및 제한사항		1. 연설회장내에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홍보물 및 명함배포는 연설회장 외부(현관·로비·실외)에서 투표개시 선언 전까지 가능 2. 애드벌룬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대회장 안팎의 지지자 현수막은 철거) 3. 음향기기(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기기 등)를 사용하는 행위 4.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팽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그 외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6장(선거운동)에서 금하는 선거운동 행위 6. 당원 대상으로 물건을 나눠주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금지함 (부채, 규정되지 않은 홍보물 등)	
중앙당 확인사항 및 기타사항		※ 원칙적으로 투표 당일 선거운동 불가(투표 독려만 가능) - 오프라인 선거운동, 말로 하는(전화 포함) 선거운동 불가 -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불가 ※ 투표 당일 온라인(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 - 단, 집단적 SNS 선거운동 불가 ※ ARS음성녹음을 통한 선거운동은 투표일뿐만 아니라 경선운동기간동안 불가	